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 교육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학교의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기준 고시 및 이행
점검 체계 마련〉

■ 김태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715호)

2026. 9.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신 문 근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학교의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기준 고시 및 이행 점검 체계 마련 · 2	
2. 개정안 부칙	15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태호 의원 등 12인

2. 발 의 일 : 2026. 7. 2.

3. 회 부 일 : 2026. 7.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여건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국가교육위원회의 소관 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교육기본법」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고 이를 실현하는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교육위원회의 학급당 적정 학생 수에 대한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점검 체계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적정 학생 수를 초과한 경우 어떠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국가교육위원회는 학급당 적정 학생 수에 관한 기준을 고시하고, 그 이행 현황을 조사·공표하며, 학생 수 초과 등으로 학교 신설 등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교육위원회가 적극적으로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학교의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기준 고시 및 이행 점검 체계 마련(안 제12조의2 신설)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국가교육위원회로 하여금 ①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의 학급당 적정 학생 수에 관한 기준을 고시하도록 의무화하고(안 제12조의2 제1항), ② 고시한 기준에 관한 학교급별 이행 현황을 조사·공표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12조의2제2항), ③ 기준을 초과하는 학교가 있는 지역에 학교 신설 또는 학급 증설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12조의2제3항), ④ 산정 기준·내용 및 이행 현황 조사·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제4항).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12조의2(학급당 적정 학생 수에 관한 고시 등) ① 위원회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급당 적정 학생 수에 관한 기준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고시한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기준에 관한 학교급별 이행 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초과하는 학교가 있는 지역의 학교 신설 또는 학급 증설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학급당 적정 학생 수 산정의 기준과 내용, 학교급별 이행 현황의 조사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나. 검토의견

- ☐ 현행 법체계상 학급당 학생 수에 관한 사항은 중장기적 방향과 연도별 구체적 기준으로 이원화되어 있음.

국가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하고(「교육기본법」 제4조제3항)¹⁾, 국가교육위원회는 학급당 적정 학생 수

1)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등) ③ 국가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고 지방

등 중장기 교육 제도 및 여건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10년 단위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함(법 제10조제1항제1호, 제11조제1항)2).

반면 유치원의 학급 수와 학급당 최소·최대 유아 수는 관할청이 정하고(「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6조, 「유아교육법」 제18조제1항)3), 초·중등학교의 학급 수 및 학급당 학생 수는 교육감이 정하며 교육감은 학년도별 학생배치계획을 수립함(「초·중등교육법」 제24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52조)4).

그러나 국가교육위원회 차원의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고, 그 이행을 점검하거나 기준 초과 시 대응할 수

자치단체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2)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위원회의 소관 사무) ①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1조에 따른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학제·교원정책·대학입학정책·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 제도 및 여건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제11조(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등) ① 위원회는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교육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3) 「유아교육법」

제18조(지도·감독) ①국립유치원은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공립·사립유치원은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0조(유치원규칙의 기재사항 등) ① 유치원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9. 그 밖에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해당 유치원의 지도·감독기관(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항

제16조(학급 수 및 학급당 유아 수) 유치원의 학급 수와 학급당 최소 및 최대 유아 수는 유치원의 유형,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할청이 정한다.

4) 「초·중등교육법」

제24조(수업 등) ④ 학교의 학기·수업일수·학급편성·휴업일과 반의 편성·운영, 그 밖에 수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학급수·학생수) 학교의 학급수 및 학급당 학생수는 교육감이 정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2조(학생배치계획) 교육감은 그가 관할하는 학교에 학생을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학년도별로 학생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⁵⁾. 실제로 국가교육위원회는 아직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상태로, 2027년 3월 공표를 목표로 계획 수립 논의를 진행 중임(법 제1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⁶⁾.

□ 이에 개정안은 국가교육위원회에 ① 기준 고시(의무) → ② 이행 현황 조사·공표 → ③ 학교 신설·학급 증설 요청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권한을 부여하여, 국가교육위원회가 중장기 교육여건 개선 사항을 심의하는 것을 넘어,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직접 고시하고 이행을 점검하도록 하여 과밀학급 문제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적극적이고 일관된 대응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 2025년 기준 초·중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평균 21.6명으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전국 평균은 20명 수준에 근접하고 있으나 학교급별·지역별·지역유형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5) 제안이유

6)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등) ① 위원회는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교육발전계획 (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국가교육발전계획의 수립) ① 국가교육위원회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교육발전계획(이하 “국가교육발전계획”이라 한다)을 그 계획을 시행하는 해의 전년도 3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연도별·학교급별 학급당 학생 수 현황]

(연도별 4월 기준, 단위: 명)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평균	24.7	24.0	23.4	23.0	22.8	22.3	22.1	21.9	21.6
초	22.3	22.3	22.2	21.8	21.5	21.1	20.7	20.0	19.4
중	26.4	25.7	25.1	25.2	25.4	25.0	24.6	24.5	24.9
고	28.2	26.2	24.5	23.4	23.0	22.6	22.9	23.4	23.4

자료: 한국교육개발원(교육통계서비스 활용)

특히 초등학교는 19.4명까지 감소한 반면 중학교는 2024년 24.5명에서 2025년 24.9명으로 오히려 증가하였고, 지역유형별로는 중소도시 23.3명·대도시 22.1명인 데 비하여 면지역 13.5명, 도서벽지 10.1명으로 격차가 크며, 시·도별로도 경기 23.6명에서 전남 17.7명까지 차이가 있음.

[지역별·지역유형별 학급당 학생수 현황]

(연도별 4월 기준, 단위: 명)

구분		2024년				2025년			
		초	중	고	전체	초	중	고	전체
전체(평균)		20.0	24.5	23.4	21.9	19.4	24.9	23.4	21.6
지역 유형	대도시	20.9	24.4	23.0	22.2	20.2	25.1	23.1	22.1
	중소도시	21.9	26.5	24.5	23.6	21.2	26.6	24.5	23.3
	읍지역	19.5	23.7	22.4	21.2	18.7	24.0	22.6	20.9
	면지역	11.3	16.4	19.7	13.8	10.7	16.6	19.8	13.5
	도서벽지	7.8	13.6	16.8	10.4	7.3	13.7	16.7	10.1
서울		20.8	23.8	23.7	22.3	20.1	24.8	23.8	22.2
부산		20.9	24.4	21.1	21.8	20.3	25.0	21.0	21.6
대구		21.7	24.8	22.8	22.7	21.1	25.4	23.2	22.7

구분	2024년				2025년			
	초	중	고	전체	초	중	고	전체
인천	21.3	26.2	23.5	22.9	20.7	26.3	23.6	22.7
광주	19.8	23.6	24.0	21.7	19.0	23.9	23.6	21.3
대전	19.5	24.0	21.5	21.0	18.7	24.2	21.3	20.6
울산	20.9	24.9	23.6	22.5	20.5	25.2	23.9	22.5
세종	19.8	23.9	23.5	21.5	19.3	24.6	23.9	21.5
경기	21.8	26.9	25.5	23.9	21.2	26.9	25.5	23.6
강원	16.0	22.6	21.4	18.7	15.1	22.8	21.6	18.3
충북	18.4	22.9	23.1	20.5	17.8	22.8	23.0	20.2
충남	17.9	24.2	24.0	20.7	17.2	24.1	24.1	20.3
전북	16.2	22.2	21.5	18.8	15.3	22.2	21.4	18.4
전남	15.7	21.5	19.9	18.0	15.0	21.6	19.9	17.7
경북	18.4	21.2	20.6	19.6	17.7	22.4	20.7	19.6
경남	19.2	24.1	22.9	21.2	18.3	24.0	23.0	20.8
제주	20.6	25.2	25.7	22.8	19.3	25.4	25.6	22.1

자료: 한국교육개발원(교육통계서비스 활용, 분교장 제외)

이러한 현황은 전국 단일의 획일적 기준보다는 학교급별·지역별 여건을 반영한 차등적 기준 설정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국가교육위원회로 하여금 단일 기준을 고시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적절성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함.

1) 기준 고시 주체 및 현행 권한배분 체계와의 정합성(안 제12조의2제1항)

☐ 연도별 구체적 기준의 고시를 국가교육위원회의 의무로 규정하는 것은 국가교육발전계획의 성격 및 현행법 체계와 상충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급당 적정 학생 수에 관한 기준은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국가교육발전계획에 포함되고, 구체적 기준은 관할청(교육감)이 정하도록 이미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기준 마련(고시) 자체는 현행법 체계하에서 이미 규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중장기적 관점이 아닌 연도별·집행적 기준을 국가교육위원회가 별도로 고시하도록 하는 것은 위원회의 기능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법 제2조제1항, 제11조제1항)7).

또한 안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신설하려는 국가교육위원회의 고시권은 현행법 제12조제1항8)에 따라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 사항에 한하여 인정되고 있는바, 새로운 고시 권한을 부여할 경우 그 고시가 교육감이 정하는 학급당 학생 수 기준(「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9))에 대하여 어떠한 규범적 효력을 갖는지

7)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①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및 교육제도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등) ① 위원회는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교육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8)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국가교육과정 기준 및 내용의 고시 등) ① 위원회는 국가교육과정(「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9)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학급수·학생수) 학교의 학급수 및 학급당 학생수는 교육감이 정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유급생
2. 제8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3. 재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하는 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의 자녀
5. 기타 지역실정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는 자

가 불분명하여 사무 권한의 중복·상충 및 현장의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아울러 농산어촌·신도시 등 지역 특성에 따라 인구 분포, 학령인구, 학교시설, 통학환경 등 교육여건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연도별 구체적 기준을 국가가 일률적으로 정하기보다는 교육감이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지방교육자치의 원칙¹⁰⁾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음.

2) 이행 현황 조사·공표 권한의 중복 여부(안 제12조의2제2항)

□ 개정안 제2항의 조사·공표 권한은 현행 교육통계조사와 중복될 소지가 있어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교육부장관은 초·중등교육 정책의 효율적 추진 등을 위하여 교육통계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하며(「초·중등교육법」 제11조의2제1항)¹¹⁾, 그 조사에는 “학급당 학생 수”가 포함되어 매년 공표되고 있음.

따라서 국가교육위원회가 별도의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조사 대

10)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교육감) ①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도에 교육감을 둔다.

11) 「초·중등교육법」

제11조의2(교육통계조사 등) ① 교육부장관은 초·중등교육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초·중등교육 연구에 필요한 학생·교원·직원·학교·교육행정기관 등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하여 교육통계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 ⑦ (생략)

⑧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 등의 업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교육통계센터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지정이나 업무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통계조사와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작성의 대상, 절차 및 결과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항목의 중복으로 학교 현장의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별도 조사를 신설하기보다는 기존 교육통계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이행 상황을 점검·공표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3) 학교 신설·학급 증설 요청 권한의 적정성 및 실효성(안 제12조의2제3항)

- 국가교육위원회가 학급당 적정 학생 수 초과 지역의 학교 신설·학급 증설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제3항은, 위원회의 기능과의 관련성이 낮고 요청의 법적 효력과 요건이 불분명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첫째, 학교의 신·증축은 재정소요, 교원수급계획¹²⁾, 학교용지 확보 가능성, 학령인구 감소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학급당 학생 수만을 기초로 신설·증설을 요청하는 것은 정책수단으로서 적절성이 낮은 것으로 보임. 특히 교육부의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한 중장기(2027~2030년) 초·중등 교과교원 수급방향 발표(2026. 6.)에 따르면 교원 신규채용 규모는 매년 감소할 예정인바, 학급 증설과 교원 수급 간 정합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12) < 2027~2030학년도 공립 교과교사 신규채용 규모(안) >

학년도		'27	'28	'29	'30
초등	학생 수(천 명)	2,035	1,871	1,721	1,601
	신규채용 교사 수(명)	2,700~ 2,900 내외	2,600~ 2,900 내외	2,500~ 2,800 내외	2,500~ 2,800 내외
중등	학생 수(천 명)	1,852	1,835	1,796	1,716
	신규채용 교사 수(명)	4,700~ 5,100 내외	4,200~ 4,600 내외	3,500~ 3,900 내외	3,300~ 3,700 내외

(출처: 교육부,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한 중장기(2027~2030년) 초·중등 교과교원 수급방향 발표, 2026.6.)

□ 둘째, 요청의 법적 효력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현행법은 국민의견 수렴·조정 결과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의 장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따르도록 하고 재심의 절차를 두고 있으나 (법 제13조제4항)¹³⁾, 개정안 제3항은 요청을 받은 교육부장관·교육감의 회신·검토·반영 의무나 불수용 시의 절차를 두고 있지 아니하여 선언적 규정에 그칠 우려가 있는 반면, 반대로 이를 기속력 있는 것으로 운용할 경우 교육감의 학생배치 권한을 제약하여 지방교육자치를 침해할 소지도 있음¹⁴⁾.

□ 셋째, 요청의 요건이 불명확하여 명확성 원칙에 비추어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초과하는 학교가 있는 지역’은 초과 학교의 수·비율과 ‘지역’의 범위(시·도, 시·군·구, 통학구역 등)가 특정되어 있

13)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교육정책에 대하여 국민의견을 수렴·조정할 수 있다.

1. 국회, 대통령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위원회가 국민의견을 수렴·조정하기로 심의·의결한 경우

② 위원회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국민의견 수렴·조정절차의 진행여부를 심의·의결하고, 그 결과를 요청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민의견을 수렴·조정할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요청기관 및 관계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관계기관의 장은 해당 교육정책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따라야 하며, 심의·의결 결과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의 요청 절차 및 처리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국민의견 수렴·조정절차의 진행여부, 제3항에 따른 처리결과, 제4항에 따른 재심의 결과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2조(학생배치계획) 교육감은 그가 관할하는 학교에 학생을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학년도별로 학생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지 아니하여, 1개 학교의 초과만으로도 요청 대상이 될 수 있는 등 집행상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4) 유사 법률안 및 병합심사 필요성

- 제22대국회에는 동일 조문(제12조의2)을 신설하려는 이훈기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15319호, 2025. 12. 17. 발의, 2025. 12. 18. 회부)이 계류 중인바, 두 법률안은 규율 대상 조문이 동일하므로 병합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유사 법률안 비교표]

구 분	이훈기의원안	김태호의원안
적용대상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좌동
기준 설정 및 고시	학급당 인원 수 적정 유지 기준 마련 및 고시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기준 고시
적정 인원 수치 기준	학급당 적정 인원 수가 20명 이하	규정 없음
이행 점검	고시사항 이행현황 조사·분석 및 결과 학급당 적정 인원 수 산정 반영	고시한 기준에 관한 학교급별 이행 현황 조사·공표
신설·증설 요청	규정 없음	적정 학생 수를 초과하는 학교가 있는 지역의 학교 신설 또는 학급 증설 필요시 위원회 의결 거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요청

양 법률안은 국가교육위원회에 기준 설정 권한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나, 이훈기의원안은 법률에 수치 기준(20명 이하)을 직접 명시하는 반면, 김태호의원안은 수치 기준을 두지 아니하는 대신 학교 신설·학급 증설 요청 권한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

음.

- 개정안과 관련하여 국가교육위원회와 시·도교육청에서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시함.

[개정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

<국가교육위원회> : 신중검토

- 현행법은 10년 단위 국가교육발전계획의 내용 중 하나로 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학령인구 변화, 교원정책 등과 함께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할 사항임
- 따라서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매년 직접 관리하며 이를 고시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정책 집행은 교육부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위해서는 △학교 신설·증축을 통한 교실 확충, △교원 수급, △학생 배치계획, △학교용지 확보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므로, 국가교육위원회가 학급당 학생 수만을 기초로 학교 신설 또는 학급 증설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시·도교육청>

○ (대구-신중검토)

- 학급당 적정 학생 수 유지로 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취지에는 공감함
- 다만, 학급당 학생 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 고시로 기준을 정할 경우 사무 권한 등 법률 간 상치될 우려가 있음
- 시·도별로 학생 수 변화, 도·농 간 지역 특성, 교원 정원, 재정 상황, 통학 여건 등 교육여건이 크게 상이한 상황에서 획일적인 기준을 설정·운영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음
- 특히 중·고등학교는 학생 선택권에 따른 학교 선호도 차이로 특정 지역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기준을 의무화하기보다는 지역별 여건과 학생배치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현행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 (경기-신중검토)

- 「교육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국가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함
- 경기도교육청도 과밀학급 문제 해소를 위해 학생배치시설을 적극 확충하고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학생배치 기준을 적용하는 등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다만, 경기도는 3기 신도시 조성, 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지속됨에 따라 인구 유입 요인이 다양하고 학교 신·증설 수요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여건을 고려할 때, 기준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서는 학급 수 조정에 따른 교원 수급 여건의 안정적 확보, 학교 신·증설을 위한 재정 소요 및 추가 학교용지 확보 등 선결 과제에 대한 종합적 검토와 단계적 해소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2. 개정안 부칙

가. 개정안의 요지

- ☐ 안 부칙은 개정안의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 조문]

안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 ☐ 일반적으로 대통령령의 정비가 수반되는 법률의 경우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는바¹⁵⁾, 개정안의 경우 학급당 적정 학생 수 산정의 기준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안 부칙과 같이 시행일을 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15) 「법제기준과 실제」(국회사무처, 2024), p.821

문 의 처

02) 6788-5186
